

[별표 3] <개정 2008.2.29>

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정조달계약
대상용역 및 공사의 특례(제41조제1항관련)

1. 특정조달계약 대상용역

세계무역기구의 일반서비스목록(WTO/MTN.GNS/W/120)상의 모든 용역을
그 대상으로 한다.

2. 특정조달계약 대상공사

UN표준산품분류(CPC)상의 모든 공사계약을 그 대상으로 한다.

3. 기 타

칠레공화국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특정조달계약 대상용역 및 공사는 제3조제
4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다.